

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14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4월 4일, 장흥순 의원(찬성자 11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장흥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이 시민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, 공공기관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상위법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먼저, 안 제1조 및 제2조는,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15년 1월 20일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법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음으로 안 제4조제4항은,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, 소방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다양한 재난현장을 경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퇴직소방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은 퇴직인력의 재활용 측면을 넘어 내실 있는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짐.
- 참고로, 본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을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이며, 2016년 기준으로 소방훈련 대상 공공기관은 4,989개소이며, 이 중 서울시 산하기관은 27.6%인 1,375개소에 해당함.

[표 1] 서울시 소방훈련 대상 공공기관 현황

구 분	소방훈련대상(전체)	서울시 산하기관	그 외 기관	미실시 기관	비교
2016년	4,989	1,375 (27.6%)	3,614 (72.4%)	0	
2015년	4,812	1,355 (28.2%)	3,457 (71.8%)	0	
2014년	4,740	1,321 (27.9%)	3,419 (72.1%)	0	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기관장”을 “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소방훈련·교육)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소방훈련·교육) ① 공공기관의 장 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.</p>